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 2020년 10월 29일 (목)

CONTENTS

- 노동시장 관련 최근 논점과 개혁방향
- 정당성을 상실한 文정부 탈원전 정책과 시사점
- 코로나19에 따른 여행관광업계 피해 현황 및 시사점

이슈브리프

(IB 2020-12)

CONTENTS

I. 노동시장 관련 최근 논점과 개혁방향 / 1

II. 정당성을 상실한 文정부 탈원전 정책과 시사점 / 10

III. 코로나19에 따른 여행관광업계 피해 현황 및 시사점 / 18

발 행 인: 지상욱

편 집 인: 김창배

편집위원: 임춘건, 이윤식, 나경태

편집간사: 김진솔

발 행 일: 2020년 10월 29일

발 행 처: 여의도연구원

인 쇄: 디엔시파크

Contents_

금주(10월 5째주)는 노동개혁, 탈원전, 여행업계 현황 등 3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최근 노동개혁 관련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노동시장 현실에 맞는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제2편에서는 주요국 원전정책 분석, 탈원전 강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당 차원의 에너지 정책 마련 등에 대해 다뤘으며, 제3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급감으로 인한 여행관광 업계 피해현황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보았습니다.

제1편: 노동시장 관련 최근 논점과 개혁방향 (김창배 경제사회연구실장)

지난 10월 5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법 개정을 입법과제로 제안. 제안 배경, 정치적 함의가 무엇이든 현재 우리 노동시장이 개혁대상인 점은 분명. 강자 독식구조, 국가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노동시장은 헌법정신에서 괴리된지 오래이며 노동법 체계는 기술 혁신, 인구감소 등 시대적 변화 흐름에 뒤처져 새롭게 출현하는 고용형태와 이에 소외된 다수 근로자를 포용하기에 한계에 봉착. 노동개혁 난제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논의 기반으로 △기술 및 시장 친화적 노동법 질서 정립, △미조합원, 실업자 등 아웃사이더 권익 강화, △노동기본권·공공이익이 조화되는 법체계 정비 등을 개혁의 방향타로 설정할 것을 제안함

제2편: 정당성을 상실한 文정부 탈원전 정책과 시사점 (김진솔 연구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에서 탈원전을 위한 경제성 조작 등이 밝혀졌음에도 정부·관계 부처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공언. 원전을 저탄소·고효율 에너지로 인식, 안정적 에너지 전환을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행보와 배치. 탈원전을 추진했던 프랑스, 대만 등도 경제적 요인,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탈원전 시간표를 조정. 文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대, △원전수출 경쟁력 약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에너지안보 위기 현실화 등 부작용이 불가피. 따라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동시에 ‘원전-신재생에너지 투트랙 전략’ 등 당 차원의 에너지정책 수립이 요망됨

제3편: 코로나19에 따른 여행관광업계 피해 현황 및 시사점 (나경태 사회문화정책실장)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업종이 피해를 입었으나, 그중에서도 여행관광업계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 전세계 관광객이 65%(2019년 대비) 급감한 영향으로 소규모 여행관광업뿐 아니라 대형 항공 여행업도 대부분 개점 휴업인 실정. 문화관광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지원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나, 업계 피해액에 비하면 미흡한 수준. 이에 당 차원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여행관광업에 대한 별도의 예산 책정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

I. 노동시장 관련 최근 논점과 개혁방향

작성: 김창배 경제사회연구실장 (kim.chang.bae@ydi.or.kr)

지난 10월 5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법 개정을 입법과제로 제안. 제안 배경, 정치적 합의가 무엇이든 현재 우리 노동시장이 개혁대상인 점은 분명. 강자 독식구조, 국가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노동시장은 헌법정신에서 괴리된지 오래이며 노동법 체계는 기술혁신, 인구감소 등 시대적 변화 흐름에 뒤처져 새롭게 출현하는 고용형태와 이에 소외된 다수 근로자를 포용하기에 한계에 봉착. 노동개혁 난제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논의 기반으로 △기술 및 시장 친화적 노동법 질서 정립, △미조합원, 실업자 등 아웃사이더 권익 강화, △노동기본권·공공이익이 조화되는 법체계 정비 등을 개혁의 방향타로 설정할 것을 제안함

1. 국민의힘, 노동개혁 논의 제안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노동법 개정을 입법과제로 제시
 - 기업구조 개편을 위한 소위 ‘공정경제 3법(이하 경제3법)’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법이 한꺼번에 바뀌야 우리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
 - 여당은 경제3법과 노동법 개정과의 연계를 경계하는 반응
 - 경제3법만 밀어붙일 경우 노동개혁은 등한시한다는 ‘친노조’ 이미지 부담
- 제안의 배경, 합의가 무엇이건 노동시장이 개혁대상인 점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최근 노동개혁 관련 논란을 살펴볼 필요
 - 김 위원장이 강조한 것처럼 한국은 △고용률 141개국 중 102위, △노사관계 130위, △임금 유연성은 84위로 모두 ‘후진국’ 수준

- 경직적 고용, 후진적 노사관계에 더해 이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등에 기인

2. 최근 노동개혁 관련 주요 쟁점¹⁾

① 유연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개월
- (경영계) 각각 6개월, 3개월로 연장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 확대
 - 시장 변화, 납기준수, 계절적 수요 등에 적절한 대응 어려움
- (국민의힘) 각각 6개월, 3개월
- (민주당)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6개월
- (해외사례) 일본, 독일, 프랑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1년

② 최저임금 구분 적용

- (경영계) 업종별, 규모별, 연령별 구분 적용
 - 업종·규모·지역별로 시장 경쟁여건, 노동집약도, 생활비 등에서 격차 존재
- (국민의힘)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 적용
- (해외사례) OECD 국가들은 업종별, 연령별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 업종별: 일본, 호주, 네덜란드 등
 - 연령별: 프랑스,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등

1) 정당案들은 의원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리

③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사용자의 지불능력' 포함

- (경영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포함
 - 지불능력 이상의 임금지급은 중장기적으로 존립 자체를 위협할 뿐 아니라 가격인상, 고용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국민 경제에도 부정적
- (국민의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성장률, 물가 등과 함께 사용자 지불능력 포함

④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의무화

- (현행) 1년 미만자, 1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자에게는 미지급
- (민주당) 소정근로시간에 상관없이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 의무화
- (경영계) 현행 퇴직급여 지급 대상 유지
 -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이라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과 배치

⑤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

- (민주당)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 파견법 등 제·개정
 -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 의무 명시
 - 생명·안전과 밀접 관련 업무에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금지
 - 현행 파견절대금지업무에 공중의 생명·건강·신체 안전 관련 업무 추가
- (경영계) 제·개정 반대
 - 고용형태 등과 산업재해 발생은 직접적 인과 관계가 불명확하며 현장의 안전관리체계가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

⑥ 파견규율 대상 '네거티브 리스트'로 변경

-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로 파견허용 업무를 제한적으로 열거
- (경영계) 금지업무외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로 변경
 - 포지티브 방식은 파견허용 업무가 협소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 다양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함

⑦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강화

- (현행)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정부)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사법부에 요청
- (정의당) 산재사망시 사업주·경영책임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10억원 벌금(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 법인의 경우, 1억원~20억원 벌금, 영업허가 취소·정지, 3배 이상 10배 이하 배상책임
- (경영계) 처벌 수위 강화 반대
 - 현재도 사업주 처벌수준이 강한테 추가적인 형사처벌 강화는 과도
 - 선진국은 “사후징벌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운용

⑧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등

- (정부) 의무가입, 당사자적용제외 신청권 없음, 보험재정 통합 운영
- (민주당) 정부와 동일
- (경영계) 임의가입, 당사자적용제외 신청권 부여, 보험재정 분리
 - 고용보험 임의가입,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이 글로벌 스탠다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과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제도 설계 필요

⑨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 (현행) 해고자·실업자 등 사업장 非종사자의 노조 가입 제한
- (정부) ILO협약을 반영,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 해고자·실업자 등 사업장 非종사자의 노조 가입 제한 규정 삭제
 - 단, 해고자·실업자 등의 기업별 노조 임원 자격은 제한
- (민주당)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가입 허용, 노조임원 허용
- (경영계) 반대
 - 노사관계 불균형이 심화되고 노사갈등이 증폭되어 기업경쟁력 약화 우려
 - 노조의 단결권이 크게 강화되는 만큼 사용자의 대항권도 국제 수준에 맞춰 개선할 필요
- (해외사례) 국별 노사문화, 법·제도, 관행, 국가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 결정

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 (현행)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 (정부안)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 (민주당)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 (경영계) 현행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유지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무관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지배·개입행위에 해당

⑪ 쟁의행위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 (현행) 생산, 그 밖의 주요 업무에 관련된 시설의 점거형태 쟁의행위 금지(노조법 제42조)

- (정부) 사업장 내 생산 그 밖의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 사용자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소위 전면적·배타적 점거) 금지, 단 비주요시설 점거는 허용
- (국민의힘) 사업장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전면 금지
- (경영계)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 사용자의 영업자유 및 시설관리권 보호,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의 일할 권리 보호
 - 부분적·병존적 점거를 허용할 경우 사실상 전면적 직장점거와 유사
- (노동계) 반대
 - 사실상 생산, 그 밖의 주요 업무에 관련 시설에 대한 일체 금지 의미
- (해외사례)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은 직장점거 금지
 - 일본은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 허용, 전면적·배타적 직장점거는 금지

⑫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전면 허용

- (현행) 쟁의행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노조법 제43조)
- (경영계) 쟁의행위 기간 중 원칙적인 대체근로의 전면 허용
 - 노조 파업에 대응하려면 대체근로 제도 필요
- (정부) 개정내용 없음
 - 대체근로제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
- (해외사례) 대부분 선진국은 대체근로를 허용
 - 단, 프랑스는 단기·파견근로자만 허용, 독일은 파견근로자만 허용

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 (현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원상회복과 별개로 형사처벌 규정(노조법 제96조)
 - 원상회복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와 예방 어려움
- (경영계)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
 -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한국에만 있는 제도
 - 노조가 해당 규정을 빌미로 고소·고발을 남용
 - 형사처벌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해결하려는 것은 노사자치주의에 위배
- (정부) 개정내용 없음
 -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기업 측 행위가 여전히 발생
- (해외사례) 대부분 선진국 형사처벌 없음
 - 美 와그너법, 테프트·하틀리법, 노사 양쪽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형사처벌 규정없음
 - 日 노조법, 2차 세계대전 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 유럽국가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자체가 없음

⑭ 노조 회계 감사의 투명성 제고

- (국민의힘) 회계감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약 보완,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 감사위원회 구성, 재정관련 서류 보존기간 확대(3년→5년)
- (경영계) 찬성
 - 노조 재정 운영상 투명성 및 민주성 제고 필요

⑮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연장: 2년 → 3년

- (현행) 단체협약 최대 2년(노조법 제32조)

- (정부) 해고자와 실업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경영계 반발에 대한 보상조치로 추진
- (경영계) 합리적인 교섭문화 변화를 통한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전환
- (해외사례) 프랑스는 5년, 미국과 독일은 법규정 없고, 일본은 최장 3년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둠

3.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과 초당적 노동개혁 방향

□ 근본적·종합적 대개혁이 시급한 우리의 노동시장의 현실

○ 헌법정신에서 괴리된 노동시장

- 강자가 기회를 독식하고 능력 발휘가 억압받는 노동시장
 - 대한민국은 각인의 기회 균등, 능력 최고도 발휘 국가를 지향한다는 헌법 전문과 달리 근로자의 10%가 속해있는 대기업·공공부문 노조는 고임금과 고용보호의 혜택을 누리고 나머지 90%는 소외
-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국민의 행복(10조)은 저하되고 근로의 권리와 의무(32조)는 후퇴
 -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를 사업주에게 전가
 -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일반 근로자와 처지가 다른 연구개발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침해
 - (통상임금 소급적용) 노사 합의로 결정했던 사안인데도 법원에 따라 상이한 해석으로 시장 참가자간 불신 조장

○ 기술혁신, 인구감소 등 시대적 변화흐름에 뒤쳐진 노동법 체계

- 단순·반복적 3차 산업시대의 공장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현 노동법으로는 저출산·고령화·AI화·공유경제 시대에 새롭게 출현하는 고용 형태와 이에 소외된 다수 근로자를 포용하기에 한계
- 탈(脫)조직·미(未)조직 근로자와 같은 노동시장 아웃사이더 보호에도 한계

○ 노조에 치우친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노사관계

- 노동조합이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노동정책을 좌지우지
- 파업시 사업장 무단 점거, 근로자대표 동의 없이는 취업규칙 변경 불가 등 헌법정신이나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노조운영 행태

□ 국가경제와 미래세대에 방점을 둔 노동개혁

○ 이같은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개혁은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기술 및 시장 친화적 노동법 질서 정립
- 둘째, 미조합원, 실업자 등 아웃사이더 권익 강화
- 셋째, 노동기본권·공공이익이 조화되는 법체계 정비

○ 여·야, 노·사의 이해가 아닌 국가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 방향이라는 점에서 노동개혁과 관련된 이해충돌의 난제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논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함

II. 정당성을 상실한 文정부 탈원전 정책과 시사점

작성: 김진솔 연구원 (kim.jin.sol@ydi.or.kr)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에서 탈원전을 위한 경제성 조작 등이 밝혀졌음에도 정부·관계부처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공언. 원전을 저탄소·고효율 에너지로 인식, 안정적 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행보와 배치. 탈원전을 추진했던 프랑스, 대만 등도 경제적 요인,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탈원전 시간표를 조정. 文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대, △원전수출 경쟁력 약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에너지안보 위기 현실화 등 부작용이 불가피. 따라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동시에 ‘원전-신재생에너지 투트랙전략’ 등 당 차원의 에너지정책 수립이 요망됨

1. 현황

- 10.20(火),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결과가 13개월만에 발표
 - 2018.6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추진
 - 2019.9月 국회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청구
 - △친여 감사위원과의 입장 충돌, △피감자들의 진술 번복, △여권의 조직적 공격 등으로 감사결과 발표가 역대 최장기간 지연
- ※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에 3개월 내 결과를 국회에 보고, 필요시 2개월 연장요청 (총 5개월)
-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등이 밝혀지면서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비판여론 비등

- 보고서는 한수원이 전기판매단가, 평균 가동률 등 경제성을 낮게 산정했을 뿐 아니라 인건비, 수선비 등 과다하게 부풀린 정황을 지적
 - 전기판매단가를 (2018년) 55,960원, (2019년) 52,670원(Mwh(메가와트시)당)으로 전망했으나, 한국전력거래소 따르면 (2018년) 62,092원, (2019년) 56,074원에 판매
 - 평균 가동률 54.4% 이하로 전망했지만, 35년간 평균 가동률은 78.3%
 - 한편, 감사원은 “정책 결정은 감사대상이 아니다”며 조기폐쇄 타당성 여부는 결론을 짓지 않아 ‘탈원전 면죄부’ 감사라는 일각의 비판
- 하지만 정부·관계부처는 감사결과와 무관하게 탈원전 기조 유지를 예고
-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성 등을 고려했을 때 조기폐쇄는 문제없었다”며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을 공식 발표
 - ‘탈원전 시간표’에 따라 2023년부터 기존 원전이 연장없이 차례로 폐쇄될 예정인 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이 긴급

〈표 II-1〉 월성1호기 관련 논란일지

날짜	주요 내용
2009.4월	한수원, 노후설비 개선위해 5600억여원 투입
2012.11월	설계수명(30년) 만료돼 가동중단
2015.2.27	원자력안전위원회 계속 승인: 2022년까지 가동 연장 결정
2017.10월	정부 <에너지 로드맵> 발표: 노후원전 수명연장 불허, 신규원전 백지화
12.29	정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공급계획에서 월성1호기의 설비용량 제외
2018.6.15	한수원 이사회, 경제성 이유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2019.9월	국회, 감사원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요청
12.24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
2019.12월말	감사원, 감사기한 1차 연기
2020.2월말	감사원, 감사기한 2차 연기 (법정시한)
4월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보류 결정: 담당 국장 교체, 재조사 지시
10.7~10.13	감사위원회, 최종의결위해 총 4차례 회의, 의결 불발로 정회(10.13)
10.16	제5차 감사위원회 소집(최종의결 예정)
10.20	감사결과 보고서 국회 제출 및 공개

* 출처: 언론발표 취합

2. 주요국 원전 정책 현황¹⁾

- 미국: “원전 수명 80년까지 연장 추진” (전체 133기 중 96기 가동중)
 - 미국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에 20년 추가연장을 승인한 바, 기본 설계수명 40년인 것을 감안하면 원전 1기를 60년 이상 사용하는 셈
 - 나아가 2010년부터 원전산업계와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원전 80년 가동 방안을 추진하며 2017.7월 심사지침서를 마련
 - 한편, 폐쇄된 일부 원전(8%)은 셰일가스 개발 등 가격경쟁력 약화, 전력수요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

- 프랑스: “10년 늦춘 원전 감축 계획” (전체 58기 중 56기 가동 중)
 - 2018.11월, 마크롱 대통령은 전력공급 안전성, 경제성을 이유로 전임 정부 올랑드 정권의 ‘원전 축소 계획’을 10년 늦추기로 결정
 - ※ 2012년 프랑스는 ‘다년도 에너지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가동원전 58기 중 14기 폐쇄, △원전발전비율 75→50% 감축, △폐센하임원전 1·2호기 조기폐쇄 등을 추진
 - 마크롱 정부는 원전 가동을 유지하되 석탄 화력발전소 4곳 폐쇄, 친환경 에너지 생산 증대 등을 함께 추진, 보다 유연한 방법으로 에너지전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

- 대만: “국민투표로 탈원전 법조항 폐기” (전체 6기 중 4기 가동중)
 - 2017.1월 차이잉원 총통은 탈원전 관련 법안을 통과, 원전 전체 6기 중 4기 가동 정지, 신규원전 건설 중단 등 탈원전 정책 추진
 - 2018년 국민투표에서 국민 59%가 ‘원전 부활’을 찬성, 결국 탈원전

1) 감사원, “감사보고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국회감사요구)”, pp.13-19.(2020.10)

관련 법조항이 폐기됐으나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해 논란

- 2017.8월 화력발전소 사고로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 전기료 인상 등으로 악화된 여론이 국민투표 결과로 이어짐

○ 독일: “탈원전을 위한 차악 선택” (전체 36기 중 6기 가동중)

- 독일 정부는 日 후쿠시마 사태 이후 2022년까지 원전 전면 폐쇄를 결정, 연간 평균 320억 유로(약 42조원) 예산이 들어가는 에너지전환 (Energiewende) 정책 추진 중

※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2030년까지 전체 전력수요 65%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골자의 탈원전 정책

- 하지만 대체에너지 확보하지 못한 채 탈원전을 추진, △화석연료 의존도 상승, △전기료 대폭 인상,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 부작용 발생

※ 독일 가정용 전기요금은 탈원전 정책 시행 전인 2010년 대비 약 28% 상승 (2019년 기준)

[그림 II-1] 연간 독일 가정용 전기요금

(단위: kWh당 유로센트)



* 자료: 독일에너지수자원협회(BDEW)

3. 탈원전 정책 강행이 가져올 부작용

① 전기료 인상 현실화... 소비자 부담 가중

- 전력공급 축소 등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데도, 文정부는 전기료 인상률에 대해 명확하게 밝힌 바 없음
 - 한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료 인상률은 2030년 23%, 2040년 38%, 전기료 인상 누적분은 2030년까지 83조원, 2040년까지 283조원으로 추산(2017년 대비)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원전설비 비중이 2020년 19.2%에서 2034년 9.9%로 축소될 예정이나,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가 원전만큼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
- ※ 2019년말 기준 에너지원별 설비비중은 △원전 19.2%, △석탄 27.1%, △LNG 32.3%, △신재생에너지 15.1%인 한편, 발전량 비중은 △원전 25.9%, △석탄 40.4%, △LNG 25.6%, △신재생에너지 5.2%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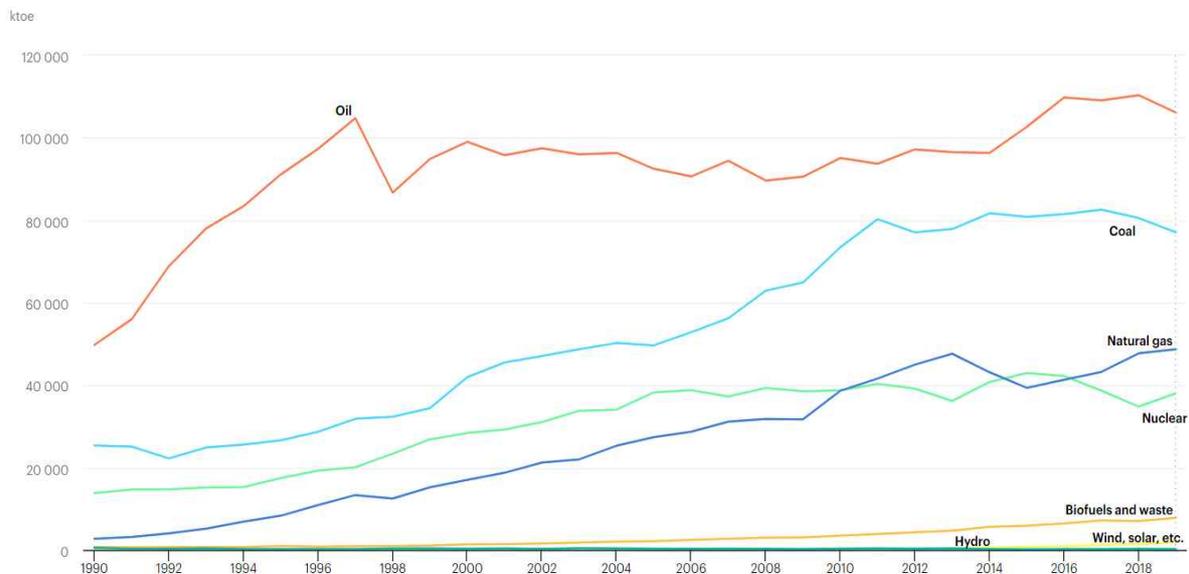
②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 국가경쟁력 약화

-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 짧은 공기(工期), 가격경쟁력 등으로 원전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
 - 미국 이외 국가에서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설계인증을 받은 사례는 한국이 유일 (한국 3세대 원전 APR 1400)
- 본국에서의 원전 가동 현황이 원전수출국의 기술수준을 의미하는 바, 탈원전은 원전 수출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의 원전수출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 등이 공격적으로 원전수출 시장에 뛰어 들고 있는 상황

③ 화석에너지로 부족분 충당?...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 2019.11月, 유엔은 <배출량 격차 보고서(EGR) 2019>에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달성의 장애요인은 탈원전 정책”이라고 지적
 - 文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온실가스 발전부문 배출 감축 폭을 당초 6,450만t에서 2,370만t으로 축소
- 탈원전 정책 이후 원자력 발전량 감소에 따른 전력생산 부족분을 석탄, LNG로 대체한 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 추세

[그림 11-2] 1990-2019 한국 에너지 공급원



* 출처: 국제에너지기구(IEA) 홈페이지(<https://www.iea.org/>)

-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원자력을 “저탄소에 기여하는 청정에너지”라고 정의,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원전 투자를 줄인다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
 - 2019.9月, 중국 정부는 ‘206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원전을 110기까지 확대하겠다는 ‘원전굴기’ 계획 발표

④ 코앞으로 다가온 에너지안보 위기

- 무(無)에 가까운 부존자원, 90% 이상의 에너지 의존율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
- 지질·지형 특성상 태양광, 풍력만으로 전력 공급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바 원전 유지는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사안
 - 9.18(金), 파티 비를 IEA 사무총장은 한국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의 의미, 원전 대체기술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
- 한편, 유럽 내 24개국과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는 독일도 탈원전 정책 이후 대정전 위기에 직면, ‘에너지 섬’인 한국 사정은 더 심각

4. 시사점

- ‘월성 1호기 조기폐쇄’뿐 아니라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
 -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부당성이 드러났음에도 文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강행을 예고한 바, 경제, 산업, 환경 등 전방위적 피해가 예상
 - 감사결과로 ‘탈원전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증폭,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
- 따라서 정부여당의 ‘마이너스 환경·에너지정책’과 차별화된 당 차원의 에너지전환 정책 마련을 위해 다음을 제안
 - 첫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전-신재생에너지 투트랙 전략’ 제시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분한 에너지 수급이 현실화될 때까지 기존 원전을 유지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

- 둘째, 에너지전환 연착륙을 위해 원전안전성 확보 및 가동수명 연장
 - 최근 3년 한빛 1·2호기, 고리 2호기 등 기존 원전 설비개선 취소 사례는 총 52건으로 부품 교체, 설비 개보수가 적기에 되지 않고 있음
- 셋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을 ‘저탄소 청정에너지’로 활용
 -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석탄 대신 LNG발전 늘리겠다고 했지만, LNG발전은 질소산화물(NOx)을 배출, 미세먼지, 오존 등을 생성하는 비친화적 에너지원
- 특히,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환경 피해, 에너지 수급 문제 등으로 주요국들은 에너지 효율성, 환경적 요인 등으로 원전을 유지
 - 탈원전, 원전축소 정책을 시행했던 국가들도 전기료 상승, 온실가스 배출 증가, 국민 여론 등으로 탈원전 시간표를 늦추고 있음
 -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폐쇄대상이 아닌 부품 교체, 설비 보강을 통해 안전성 확보 후 수명연장하는 것이 추세임을 강조

Ⅲ. 코로나19에 따른 여행관광업계 피해 현황 및 시사점

작성: 나경태 사회문화정책실장 (na.kaeng.tae@ydi.or.kr)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업종이 피해를 입었으나, 그중에서도 여행관광업계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 전세계 관광객이 65%(2019년 대비) 급감한 영향으로 소규모 여행관광업뿐 아니라 대형 항공·여행업도 대부분 개점 휴업인 실정. 문화관광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지원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나, 업계 피해액에 비하면 미흡한 수준. 이에 당 차원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여행관광업에 대한 별도의 예산 책정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

1. 국내·외 관광산업¹⁾ 피해 현황

□ 전 세계 관광객 감소 현황²⁾

- 2020년 9월 21일 발간된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관광객은 2019년 대비 65% 급감
 - 감소율은 전년 동월 대비 2020년 2월 16%, 3월 64%, 4월 97%, 5월 96%, 6월 93%
 - UNWTO는 여행 금지 조치를 풀고 코로나 치료제가 상용되어도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최소 2년 6개월, 최대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

1) 관광사업법 2조 1항: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출처: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 유엔 세계관광기구 보고서 2020년 9월 21일 발간

□ 외국인의 한국방문(訪韓) 현황³⁾

-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외국인 방문객 수는 1~9월 약 231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9.1% 감소(2020년 9월 27일 기준)
-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월 대비 2020년 2월 43%, 4월 98.2%, 6월 97.5%, 8월 95.7%, 9월 96.1% 급감

□ 내국인의 해외여행 현황⁴⁾

-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여행 금지 및 자제 요청, 전 세계 입금 금지 조치, 이동 자제로 인해 해외여행이 전년 동월 대비 2020년 2월 60%, 4월 98.6%, 6월 98.1% 8월 97%, 9월 97.1% 급감

□ 국내 여행사 피해 현황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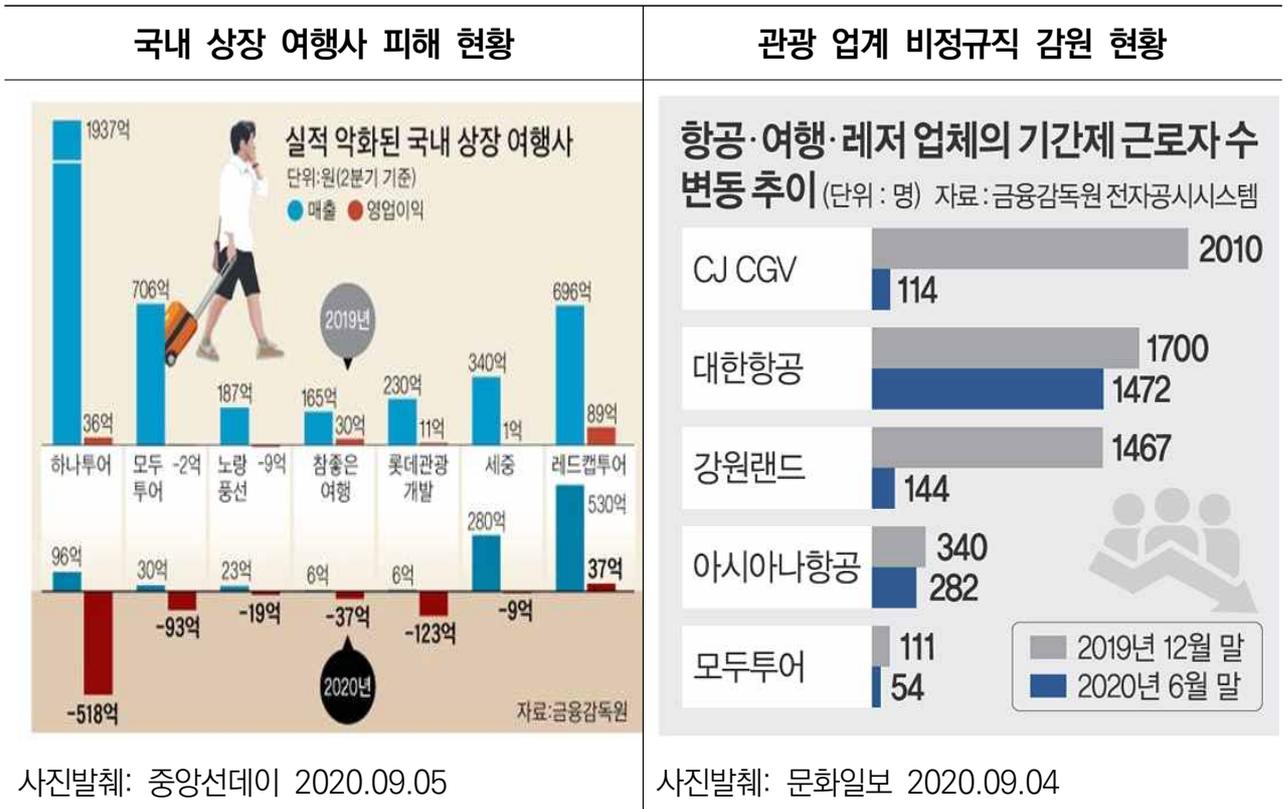
- 2019년 9월 여행업 사업체는 22,609개였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 6월 21,671개로 약 1천 개 폐업
- 여행업계 1위 하나투어는 2020년 2분기 518억원 상당의 영업손실 발생
- 항공여행레저업계 전체로는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대량 해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CJ CGV는 95%를 감원 (2,010명 → 114명)

3) 출처: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 유엔 세계관광기구 보고서 2020년 9월 21일 발간

4) 출처: 2020년 9월 27일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5) 출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20년 6월

[그림 III-1] 항공여행레저업계 피해 현황



□ 국내 관광레저 소비지출 감소 현황⁶⁾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관광레저분야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24.5조 원(약 19.7%) 감소

- 총 소비지출액: 115.7조 원(2019.1~8월) → 93.8조원(2020.1~8월)

○ 업종별 감소 현황

- 여행업 88.8%, 항공업 74%, 관광숙박업 32.5%, 레저스포츠체험업 11.5%로 감소

○ 관광업계 총 매출 피해액은 9조 원(추정치)에 달할 것으로 추정

6)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 및 연관 분야 카드 사용액 + 현금 사용 합계

- 여행업 5조원, 호텔업 1.8조원, 유원시설업 약 6,896억원, 국제회의업 약 4892억원, 카지노 약 8,970억 원 등 매출 감소 추정(2020.1~9월 중 전년동기 대비)

※ 여행관광업 피해현황 관련 언론보도

- ▶ 한국관광공사, 코로나19 이후 업계 폐·휴업률조차 파악 못 하는데... 문체부는... (문화일보, 2020.10.16.),
- ▶ 더는 취업 불가능... 코로나에 여행사 1천곳 문닫아 (SBS, 2020.10.5.)
- ▶ 코로나 직격탄 여행업계, 상장폐지 사례까지 나올까 (이데일리, 2020.9.2.)
- ▶ 관광업 실업대란 종사자 26만 모두 일자리 잃을 수 있어 (연합뉴스, 2020.9.2.)

2. 국내 지원정책 현황

□ 문화관광부

- 2020년 2월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특별 용자를 통해 500억 규모의 영업비용(인건비, 임차료) 용자 실시
- 2020년 3월 관광진흥기금을 500억에서 1천억으로 확대, 기존 용자의 상환유예도 1천억에서 2천억으로 늘려 지원
- 대출 금리도 기준금리에서 0.75% 차감, 1.25%로 지원함

□ 고용노동부

- 2002년 3~9월 6개월간 여행, 숙박, 관광운송, 공연 4개 업종에 대한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2020년 1월 말, 고용보험 DB에 등록된 특별고용지원 업종 4개의 사업장은 13,845개소며 인원은 171,476명으로 추산됨

- 특별고용지원 업종 연장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기간은 2020년 3월까지 연장되었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기간이 60일 연장됨

- 연장 대상 업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는 제주관광진흥기금에서 특별용자를 실시

- 총 사업비 5,700억 원(특별용자 3천억 원, 상환유예 2,700억 원)

- 경영안정자금 개인 1.2억 원 이내, 법인 12억 원 이내

- 시설 개보수 자금 개인 12억 이내, 법인 24억 이내

3. 정책 제안

□ 당 차원의 여행관광업 현장 방문 및 정책 간담회 시행

○ 여행·관광·항공·숙박 관련 업종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관련 종사자 면담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

- 최근 여의도연구원에서 개최한 여행업계 좌담회에서는 여행업종 직접 지원, 정부매칭지원 바우처 신설, 온누리상품권 사용 허가, 코로나 안심숙박 인증제 도입 등을 제안된 바 있음

□ 여행관광산업에 대한 별도 예산 책정 검토

○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여행업계를 위해 ‘여행관광업 지원을 위한 특별 예산’ 편성을 당 차원에서 마련

이슈브리프 목록 (최근 발간순, 2019.1.10.~現在)

이슈브리프 2020-11 (발간일: 2020.10.15)

- ▶ 실효성 중심의 재정준칙과 재정감독원 도입 제안 ▶ 북한 암호화폐 절취 실태와 정부 대응의 문제점
- ▶ 부동산 과세강화의 문제점 진단 및 시사점 ▶ 초고령사회 대비 주택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방안

이슈브리프 2020-10 (발간일: 2020.9.28)

- ▶ 전월세전환율 2.5% 강제인하의 타당성 검토 ▶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유통정책 제언
- ▶ 포털 SI알고리즘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이슈브리프 2020-09 (발간일: 2020.9.17)

- ▶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와 정책방향 ▶ 코로나19, 중소기업 생존·도약을 위한 정책제언
- ▶ 코로나19, 국내외 육아보육 정책 검토 및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08 (발간일: 2020.8.13)

- ▶ 최저임금 수준, 중위임금 60%로 제도화 ▶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일가정양립정책' 방향
- ▶ 아동학대범죄 현황과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제안

이슈브리프 2020-07 (발간일: 2020.7.23)

- ▶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분석 ▶ 2020 美 대선 판세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 ▶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예술인 피해 현황 및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06 (발간일: 2020.6.25)

- ▶ 악화일로 국가재정, 재정건전성 회복 시급 ▶ 데이터청 설립을 위한 현안과 과제
- ▶ '남북 공동선언' 재점검과 과제: '6·15선언'을 중심으로

이슈브리프 2020-05 (발간일: 2020.5.28)

- ▶ '전국민 고용보험제' 우파적 대안 모색 시급 ▶ '김정은 신변이상설': 대응과 후속조치의 문제점
- ▶ 영국 보수당의 장수 비결과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04 (발간일: 2020.4.2)

- ▶ 역대 총선에서의 사전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시사점 ▶ 文정권 정책평가와 국정지지도 비교 및 상관관계 분석
- ▶ 'n번방' 사태: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해외사례 검토 ▶ 신종 코로나 충격의 고용감소 추정과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03 (발간일: 2020.3.12)

- ▶ 신종코로나의 경제쇼크, 정부대응과 시사점 ▶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북한: "바로 보기"
- ▶ 포털의 댓글과 실시간검색어 폐지: 의미와 과제

이슈브리프 2020-02 (발간일: 2020.2.13)

- ▶ 문재인 정권의 '국민기만' Top 10 ▶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세대상생형 주거정책 방향
- ▶ 대한민국 2040년: 정치인재 양성과 한국당의 과제

이슈브리프 2020-01 (발간일: 2020.1.16)

- ▶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한 당의 대응방향 ▶ 최근 美-이란간 충돌 관련: 현황, 파장, 전망
- ▶ 2030 사로잡은 美·日 청년보수정치 사례분석 ▶ 소상공인기본법 통과 의의와 향후 과제

이슈브리프 2019-11 (발간일: 2019.12.19)

- ▶ ‘초슈퍼’ 예산과 ‘초미니’ 재정승수 ▶ 2019 핑수 열풍의 사회적 의미와 교훈
-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의 쟁점과 대응방향

이슈브리프 2019-10 (발간일: 2019.11.21)

- ▶ 탈북자 강제복송: 흔들린 원칙, 상처받은 국격(國格)
- ▶ 공유모빌리티 ‘타다’ 관련 쟁점 및 시사점 검토 ▶ 위험적이며 정치적인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이슈브리프 2019-09 (발간일: 2019.10.31)

- ▶ 공수처,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改惡)’ ▶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 ▶ 점증하는 장기 복합불황 공포

이슈브리프 2019-08 (발간일: 2019.10.10)

- ▶ 文정부 ‘역대 최고 고용률’의 실상과 대책 ▶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의도, 평가, 전망
- ▶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제도마련 필요성

이슈브리프 2019-07 (발간일: 2019.9.19)

- ▶ 미국發 ‘한-일 핵무장론’ 대두: 쟁점과 대책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 ▶ 국민연금 재정위험과 개편방안

이슈브리프 2019-06 (발간일: 2019.8.29)

-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배경, 의도, 파장 ▶ ‘강대강’ 대응으로 일본 수출규제 고착화 우려
- ▶ 확대되는 1인 가구와 보수주의 가족가치

이슈브리프 2019-05 (발간일: 2019.3.14)

- ▶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 유튜브 ‘슈퍼헛’ 논란, 정치자금법의 한계와 시사점
- ▶ (현안보고) 베트남 미북회담 ‘노딜’: 원인, 평가, 전망

이슈브리프 2019-04 (발간일: 2019.2.28)

- ▶ 궤변으로 덮을 수 없는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 ▶ 사용자 제로, 제로페이
- ▶ 자치경찰제, 성급한 도입으로 인한 실패 우려 ▶ (현안보고) 2차 미북정상회담 전망: 쟁점과 대책

이슈브리프 2019-03 (발간일: 2019.2.14)

- ▶ 노인연령 기준 상향 논의의 출발점은 일자리 창출 ▶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
- ▶ 드라마 <SKY캐슬>을 통해 본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 ▶ (현안보고)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20개월 경제 성적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필패(必敗) 경고음”

이슈브리프 2019-02 (발간일: 2019.1.24)

- ▶ 체육계 성폭력 사건의 민낯과 과제 ▶ 주택공시가격 급속 인상의 문제점
- ▶ 2018 교육여론조사(KEDI POLL) 분석 ▶ 현실과 동떨어진 자동차세와 과세기준 개편 필요

이슈브리프 2019-01 (발간일: 2019.1.10)

- ▶ 저출산 인식에 대한 우리 당의 반성과 인식의 전환 ▶ 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없애려고 하는가?
- ▶ 거짓 통계로 오염된 한국의 소득분배 ▶ (현안보고) 북한 및 한반도 정세: 평가, 전망, 대응

여의도연구원은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